

광주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1나5317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1나53176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18가단524851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신원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부원

변론 종결 2022. 4. 6.

판결 선고 2022. 5. 18.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18가단524851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560,71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제3면 제2행부터 제5행까지의 "피고는 ~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를 "피고는 2018. 5. 23. C에 대하여, 변제기를 2013. 10. 24.로 정한 2003. 10. 25.자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제1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과 변제기는 2015. 5. 27.로 정하고,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24%1) 인 2005. 5. 28.자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광주지방법원 2018차3069호로 이 사건 제1, 2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로 변경하고, 제4면 제10행 "16호증"을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급명령의 기초가 된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제1, 2 대여금 채권은 모두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전부금과 이 사건 배당금의 합계 51,560,716원(= 이 사건 전부금 29,903,488원 + 이 사건 배당금 21,657,228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C을 대위하여2)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51,560,716원 상당의 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긍정)

원고는 C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3가소231678호 판결에 기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채권, 광주지방법원 2010가소200429호 판결에 기한 1,4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채권, 광주지방법원 2017차전6017호 지급명령에 기한 19,665,674원 및 그중 19,589,06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강제경매가 이루어져(광주지방법원 D, 광주지방법원 E) 위 세 채권의 원리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고, 이후 현재까지 위 세 채권의 원리금은 134,499,358원(광주지방법원 E 배당표의 원고 채권금액계란 기재 168,251,368원 - 위 배당표의 원고 배당액란 기재 33,752,010원)이 넘게 남아있는 사실은 앞서 제1의 가 2)항 및 제1의 다항에서 보았거나 갑 제3,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위 134,499,358원이 원고가 C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청구하는 51,560,716원을 초과하는 것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대위청구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함은 인정된다.

또한 갑 제3, 9 내지 13, 16호증,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4. 6. 현재 채무자인 C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그가 무자력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제1 대여금 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긍정)

제1항에서 본 기초사실에 나타났거나 갑 제7, 8, 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논리칙과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C 사이의 2003. 10. 25.자 차용증 작성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대여금 채권은 통정허위표시인 2003. 10. 25.자 차용증 작성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① C의 부동산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은 2017. 8. 21. 그 신청이 이루어졌고, 2017. 8. 22. 그 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며, 2018. 7. 30. 그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피고는 그

배당표 작성을 두 달여 앞둔 2018. 5. 23. 이 사건 제1, 2 대여금 채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2018. 6. 19.로부터 3일이 지난 2018. 6. 22.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② 이 사건 제1, 2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그 대여일로부터 무려 10년 가까이 경과한 날이다.

③ 이 사건 제1, 2 대여금 채권의 채권자는 모두 피고이고, 채무자는 모두 C인데, 피고와 C은 형제이다.

④ 피고는 그와 C 사이의 2003. 10. 25.자 차용증 작성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발령을 위한 신청에서는 피고의 C에 대한 2003. 10. 25.자 대여에 수반하여 작성되었다고만 주장하면서, 위 대여사실을 뒷받침하는 피고와 C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은 제출하지 않다가, 이 사건에서는 C의 I(피고와 C의 부친이다)에 대한 차용금 3,000만원 반환채무를 두 차례에 걸쳐 대위변제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을 변경하면서도, I과 피고 사이의 2002. 4. 19.자 금융거래내역과 I과 H(피고의 배우자이다) 사이의 2003. 10. 22.자 금융거래내역만을 제출하고 I의 C에 대한 대여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I과 C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은 제출하지 않았다. 즉 피고는 그와 C 사이의 2003. 10. 25.자 차용증 작성 경위에 관하여 금융거래내역에 맞추어 그 주장을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경한 주장 모두에 관하여 그 주장을 직접 뒷받침하는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한 바 없다.

다.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부정)

원고가 피고와 C 사이의 2005. 5. 28.자 차용증 작성도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갑 제2, 3, 7, 8, 14호증을 제출하였고, 앞서 제3의 가항 ① 내지 ④에서 본 것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14호증, 을 제3, 6, 7, 11 내지 13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나 앞서 제3의 가항 ① 내지 ④에서 본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를 배척한 채 피고와 C 사이의 2005. 5. 28.자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 작성을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그와 C 사이의 2005. 5. 28.자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 작성에 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발령을 위한 신청에서 C의 3,000만 원 지급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였고,

그때 위 3,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여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제1심에서도 C의 G에 대한 차용금 3,000만 원 반환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피고의 2005. 5. 27.자 금융거래내역 및 자기앞수표거래내역, G의 2005. 5. 30.자 금융거래내역 및 자기앞수표 입금내역을 제출하였다.

② 피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지급명령 발령을 위한 신청 및 제1심에서와 같이 주장하면서 G의 C에 대한 대여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G와 C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③ 당심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C의 차용금 3,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피고에게 C의 차용금 채무가 변제되었음을 증명하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제3, 6, 7,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부합하고 전체적으로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권이 통정허위표시인 2005. 5. 28.자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 작성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 사건 전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인정 여부(피대위채권 부정)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제1, 2 대여금 채권이 모두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는 채무자인 'C'에게 이 사건 전부금 29,903,488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의 이 사건 제1 대여금 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의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전부금 29,903,488원을 지급받은 것은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권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변제받은 것에 해당할 뿐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전부금 29,903,488원은 지급일인 2018. 7. 30.을 기준으로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권의 지연손해금 22,862,466원(= 원금 3,000만 원 × 변제기 다음날인 2015. 5. 28.부터 지급일인 2018. 7. 30.까지 약정이율 범위 내 피고가 구하는 연 24%)과 원금 7,041,022원의 변제에 순차로 모두 충당되어,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권은 위 2018. 7. 30.을 기준으로 원금 22,958,978원(= 원금 3,000만 원 - 위

7,041,0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약정이율 범위 내 피고가 구하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고 볼 수 있을 뿐이고, 피고가 이 사건 전부금 29,903,488원을 지급받은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이 사건 배당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인정 여부(피대위채권 부정)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제1, 2 대여금 채권이 모두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는 채무자인 'C'에게 이 사건 배당금 21,657,228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이 사건 제1 대여금 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의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전부금의 지급에 따라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권은 위 2018. 7. 30.을 기준으로 원금 22,958,9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되는 것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 지급일인 2020. 1. 2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을 계산하면 31,095,891원(= 잔존 원금 22,958,978원 + 이에 대한 2018. 7. 31.부터 2020. 1. 21.까지 약정이율 범위 내 피고가 구하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8,136,913원)이 된다.

한편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사람이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사람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지만, 이때 자신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배당받은 채권자는 그 초과 부분을 정당한 배당을 받지 못한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배당금 지급일인 2020. 1. 21.을 기준으로 C에

대하여 이 사건 제2 대여원리금 31,095,891원의 지급채권을 갖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보면, 무효인 이 사건 제1 대여금채권을 포함한 집행채권을 기준으로 안분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피고가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 21,657,228원 중 초과 배당을 받은 부분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제2 대여원리금 채권자인 피고가 채무자인 'C'에게 위 21,657,228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배당금 21,657,228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C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21,657,228원 상당의 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황진희

판사김용신

판사정영하

1)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대여금채권 지연손해금의 약정이율은 연 25%이나,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연 24%만을 구하였다.

2) 제1심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을 전제로 판단하였으나, 뒤에서[제9면의 각주]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기록상 이러한 직접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찾아볼 수 없고, 원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C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 청구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을 뿐이다.

3) 원고의 2020. 12.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와 2020. 12. 4.자 준비서면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준비서면과 법정진술을 살펴봐도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되, C이 아니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구한다고 하고

있을 뿐이고, 정당한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 초과 배당을 받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 바가 없으며, 이에 따라 초과 배당을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주장한 바도 없다.